##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07

발의연월일: 2022. 9. 19.

발 의 자:서동용ㆍ권인숙ㆍ김정호

김철민 • 도종환 • 박재호

송갑석 · 신정훈 · 안민석

이동주 · 조승래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·운영기 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함)을 수립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자격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, 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의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현황만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및 자격정책 수립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 법률 제 호

##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를"을 "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격관리·운영기본계획) ①	제7조(자격관리·운영기본계획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	③
수립하기 위하여 <u>자격정책 관</u>	<u>국가자격 및</u>
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	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
	태조사를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